

대전지방법원 2021. 3. 24 선고 2020가단1425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박환택, 김준동, 홍성필, 김말금, 최단비, 한혜윤, 이선영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24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각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. 5. 13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9. 11. 19. 접수 제72386호로 마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김양규

별지